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아동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5. 1. 23.(목)
- 회부일자: 2025. 1. 23.(목)
- 검토기간: 2025. 1. 23.(목) ~ 2025. 2. 3.(월)

## 2. 제안이유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안)	운영방식	세대수
빌리브라디체 어린이집(가칭)	본동 760번지 (본동)	377.745m <sup>2</sup> (지상1)	40명 (예정)	민간위탁	520

##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 위탁기간 : 5년(준공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
-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 자문

## 4.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규위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 본동 760번지 일원의 빌리브라디체 아파트는 총 520세대로 2025년 6월 준공예정으로 2025년 1월 14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2025년 1월 17일 설치·운영 협약서(안)을 체결하였으며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임.
  
- 보육 서비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4조의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